

# 서울市 學校定期口腔檢査實態 調查研究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豫防齒學教室

白 大 日

## II. 調查對象 및 方法

### — 目 次 —

- I. 緒 論
- II. 調查對象 및 方法
- III. 調查結果
- IV. 考 按
- V. 結 論
- 參考文獻
- 英文抄錄

### 1. 調查對象

서울特別市 國民學校 121個校와 中學校 76個校를 調查對象으로 하였다.

### 2. 調查方法

1979年 9月 中에 서울特別市 學校健康管理所가 開催하였던 「初中學校養護教師研修會」에 參加한 國民學校와 中學校 養護教師 197名에게 그림 1과 같이 作成된 設問紙로 設問調查를 하였다. 學校定期口腔檢査實態로서는 實施與否와 口腔檢査者, 被檢學生數, 連口腔檢査日數等을 調查하였고, 아울러 養護教師들이 定期口腔檢査過程에 經驗한 問題點과 結果處理方法, 養護教師의 口腔檢査統計表作成能力, 教育效果와 活用度 및 改善方向에 對한 養護教師들의 見解等도 調查하였다.

## I. 緒 論

學校定期口腔檢査는 體質檢査의 一環으로 每年 5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의 期間 中에 學校人口의 口腔健康狀態를 把握하고, 口腔健康에 對한 關心을 增大시키며, 口腔保健知識과 態度 및 行動을 變化시킬 目的으로 實施되고 있다. <sup>1,2)</sup> Pelton等<sup>3)</sup>이 疾病을 效果의으로 管理하는 方法을 開發하기 爲하여 疾病의 發生樣態를 優先的으로 調查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는 事實만으로도 學校定期口腔檢査의 必要性이 充分히 理解될 수 있고, 學校保健에 關한 朴<sup>4)</sup>, 金<sup>5)</sup>, 曹<sup>6)</sup>, 金<sup>7)</sup>, 李<sup>8)</sup>, 李<sup>9)</sup>, 李<sup>10)</sup> 등의 許多한 研究結果 報告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學校定期口腔檢査에 對한 體係的 調查研究의 結果는 報告되어 있지 않다. 每年 定期的으로 實施되고 있는 學校定期口腔檢査過程의 不合理한 問題點들만이 露呈되고 있다.

이에, 著者는 서울市 國民學校와 中學校의 定期口腔檢査實態와 問題點을 調查하여, 分析 檢討해 본 바 있어, 그 結果를 報告한다.

## III. 調查結果

1. 定期口腔檢査實施率: 1979年度에 定期口腔檢査를 實施한 學校는 表 1과 같이, 197個校의 學校中 184個校이어서, 93.4%의 學校에서 定期口腔檢査를 實施한 것으로 算出되었다. 그러나, 國民學校의 定期口腔檢査實施率은 95.9%, 中學校의 定期口腔檢査實施率은 89.5%이었다.

表 1. 定期口腔檢査實施率.

學校級	調查對象學校數	實施學校數	實施率(%)
計	197	184	93.4
國民학교	121	116	95.9
중학교	76	68	89.5

2. 定期口腔檢査者: 定期口腔檢査를 實施한 184個校의 學校에서 口腔檢査를 擔當하였던 口腔檢査者 中에는, 表 2와 같이, 齒科大學이나 其他 公共口

그림 1 학교정기구강검사실태 조사용지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정기구강검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한 답지 중 해당되는 답지 앞의 괄호 안에는 ○표를 몇개라도 해 주시고, 밑 줄 위에는 해당되는 사항이나 의견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학교에서는 1979년도 정기구강검사를 실시하였습니까?  
 ( ) (1) 예  
 ( ) (2) 아니오
2. 귀 학교에서는 어떤 분이 1979년도 정기구강검사를 해 주셨습니까?  
 ( ) (1) 교의로 위촉한 개업치과의사  
 ( ) (2) 교의로 위촉하지 않은 개업치과의사  
 ( ) (3) 치과대학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학생은 제외)  
 ( ) (4) 기타.....
3. 정기구강검사를 할때, 귀 학교의 아동은 몇학급에 몇 명이었습니까?  
 .....학 급
4. 귀 학교 아동에 대한 정기구강검사를 몇 명의 치과의사(치과대학생 포함) 하하였습니까?  
 .....명의 치과의사가..... 일간에
5. 정기구강검사과정에 경험하셨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 (1) 검사해줄 치과의사(치과대학생 제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 ) (2) 교내행사로 검사일정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 ) (3) 검사비용을 열충하기가 어려웠다.  
 ( ) (4) 학급담당 교사들의 협력이 부족하였다.  
 ( ) (5) 학교장의 지원이 미온적이었다.  
 ( ) (6) 검사를 하는 치과의사가 무성의하였다.  
 ( ) (7) 검사를 받는 아동들이 비협조적이었다.  
 ( ) (8) 검사시간이 짧았다.  
 ( ) (9) 기 타.....
6. 정기구강검사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 ) (1) 아동에게 알려주었다.  
 ( ) (2) 학부모에게 통지하였다.  
 ( ) (3)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하였다.  
 ( ) (4) 집계 분석 평가해 보았다.
7. 구강검사 통계표 작성할 때, 충치치수를 어떻게 계산하였습니까?  
 ( ) (1) 충치 또는 치료할 치아로 표시된 치아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아동의 수  
 ( ) (2) 충치 또는 치료할 치아나 빼야 할 치아로 표시된 치아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아동의 수  
 ( ) (3) 충치 또는 치료할 치아나 빼야 할 치아 혹은 뽑은 치아로 표시된 치아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아동의 수  
 ( ) (4) 충치 또는 치료할 치아나 빼야 할 치아 혹은 뽑은 치아 또는 치료된

- 치아로 표시된 치아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아동의 수  
 ( ) (5) 기타의 계산방법.....
8. 구강검사 통계표를 작성할 때, 처치치수를 어떻게 계산하였습니까?  
 ( ) (1) 한개 이상의 치료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수  
 ( ) (2) 치료된 치아나 뽑은 치아로 표시된 치아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아동의 수  
 ( ) (3) 치료된 치아나 뽑은 치아 또는 뽑아야 할 치아로 표시된 치아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아동의 수  
 ( ) (4) 기타의 계산방법.....
  9. 자신이 작성한 구강검사 통계표의 정확도론 어떻게 보십니까?  
 ( ) (1) 정확하다고 본다.  
 ( ) (2) 부정확하다고 본다.
  10. 전국적으로 집계된 정기구강검사의 결과가 만약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1) 구강검사자의 오진  
 ( ) (2) 구강검사 통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의 오류  
 ( ) (3) 허위보고  
 ( ) (4) 기 타.....
  11. 정기구강검사로 구강보건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이 증가되었다고 보십니까?  
 ( ) (1) 많이 증가되었다고 본다  
 ( ) (2) 약간 증가되었다고 본다  
 ( ) (3) 증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12. 정기구강검사로 학부모의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 관심도가 증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많이 증가되었다고 본다  
 ( ) (2) 약간 증가되었다고 본다.  
 ( ) (3) 증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13. 정기구강검사의 결과가 교내에서 아동들의 구강보건관리 사업을 계획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 (1)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2) 참고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본다
  14. 정기구강검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1) 현 상태대로 계속해야 한다.  
 ( ) (2) 개선하여, 계속해야 한다  
 ( ) (3) 관심없다  
 ( ) (4) 폐지해야 한다.
  15. 정기구강검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타의 고견을 더 기술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腔保健醫療機關에 奉職하는 齒科醫師가 37.9%로서 가장 많았고, 學校齒科醫師로 委囑된 開業齒科醫師가 36.9%이었으며, 學校齒科醫師로 委囑되지 않은 開業齒科醫師는 15.3%이었다. 定期口腔檢査를 實施한 學校數보다 口腔檢査者가 많은 것은 複數應答의 結果이다.

3. 檢査者一人當一日檢査人員: 197個校에서 定期口腔檢査를 擔當하였던 連齒科醫師數는 表3 및 4와 같이, 972名이었고, 連被檢者數는 12,297 學級の 730,388名이어서, 檢査者一人은 하루 平均 751.4 名의 學生에 對한 口腔檢査를 한 것으로 計算되었다. 그러나, 檢査者一人當一日檢査人員이 國民學校에서는 807.3名, 中學校에서는 615.4名으로 算出되었다.

表 2. 口腔檢査者.

口 腔 檢 査 者	數	比 率(%)
計	203	100.0
學 校 齒 科 醫	75	36.9
開 業 齒 醫	31	15.3
公 職 齒 醫	77	37.9
其 他	13	6.4
無 應 答	7	3.4

註: 複數應答의 結果임

表 3. 檢査者一人當一日 檢査學級.

學 校 級	連檢査者	連被檢學級	檢査者當一日檢査學級數
計	972	12,297	12.7
國民학교	689	9,460	13.7
中 學 校	283	2,837	10.0

4. 檢査者一人當一日檢査學級: 表4와 같이, 連檢査者는 972名이었고, 連被檢學級은 12,297學級이었으므로, 連被檢學級을 連檢査者數로 나누어 算出한 檢査者一人當一日檢査學級은 12.7學級이었다. 國民學校에서는 13.7學級, 中學校에서는 10.0學級으로 計算되었다.

5. 被檢者一人當檢査時間: 檢査者一人이 하루 平均 5時間씩 檢査를 하였다고 假定하고 算出하면, 表5와 같이 連檢査時間은 4,860時間이었고, 이를 連被檢者의 數로 나누어 計算한 被檢者一人當 檢査時間은 24.0秒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被檢者一人當檢査時間이 國民學校 兒童에서는 22.3秒, 中學校

學生에서는 29.3秒로 算出되었다.

表 4. 檢査者一人當一日檢査人員.

學 校 級	連檢査者	連被檢者	檢査者一人當一日被檢者數
計	972	730,388	751.4
國民학교	689	556,240	807.3
中 學 校	283	174,148	615.4

表 5. 被檢者一人當 檢査時間

學 校 級	連檢査者	連檢査時間	連被檢者	被檢者一人當檢査時間(秒)
計	972	4,860	730,388	24.0
國民학교	689	3,445	556,240	22.3
中 學 校	283	1,415	174,148	29.3

6. 口腔檢査過程上的 問題: 定期口腔檢査를 實施하는 過程에 養護教師들이 經驗하였다는 問題點에서, 表6과 같이, 檢査時間의 不足을 經驗하였다고 反應한 養護教師가 52.7%이어서, 時間的 制約이 가장 큰 問題라고 볼 수 있었고, 檢査者인 齒科醫師의 招聘難을 呼訴하였던 양호교사는 44.6%, 檢査費用의 不足이라고 반응한 양호교사는 35.3%, 檢査者의 無誠意라고 반응한 양호교사는 28.3%, 檢査日程의 調停難을 호소한 양호교사는 11.4%, 學校長의 非協調를 호소한 양호교사는 10.9%, 學級擔任教師의 非協調를 호소한 양호교사는 9.2%, 學生의 非協調를 호소한 양호교사는 2.7%이었다.

7. 檢査結果處理方法: 定期口腔檢査結果를 處理하는 方法은, 表7과 같이, 57.6%의 學校에서 學父母에게 口腔檢査의 結果를 通知해 주고 있었고, 52.2%의 學校가 學生에게 알려주고 있었으며, 33.7%의 學校가 上級行政機關에 報告하고 있었고, 22.3%의 學校는 校內에서 集計 分析 評價해 보고 있었다.

8. 養護教師의 口腔檢査統計表作成能力: 口腔檢査結果를 處理하는 方法의 하나인 口腔檢査統計表의 作成을 爲하여 蝕蝕患者數(蝕齒者數)를 올바르게 計算한 양호교사는 表8과 같이, 3.8%에 不過하였고, 餘他 양호교사는 잘못 計算하고 있었다. 處置者數를 올바르게 計算한 양호교사는 表9와 같이, 46.7%에 不過하였고, 餘他의 양호교사는 亦是 잘못 計算하고 있었다. 그리고, 自身이 作成한 口腔檢査統計表를 正確하다고 생각하는 養護教師는 表

表 6. 定期口腔檢査 過程의 問題

應 答 者	數	百分率(%)
구강 검사 시간의 부족	97	52.7
치과의사 초빙난	82	44.6
검사비용의 부족	65	35.3
검사자의 무성의	52	28.3
검사일정의 조정난	51	11.4
학교장의 비협조	20	10.9
학급담임교사의 비협조	17	9.2
학생의 비협조	5	2.7
기 타	22	12.0
무 응 답	15	8.2

註: 複數 應答의 結果임.

表 7. 口腔檢査結果 處理方法

應 答 者	數	比率(%)
학부모에게 통지	106	57.6
학생에게 알려줌	96	52.2
상급 행정 기관에 보고	62	33.7
집계, 분석, 평가	41	22.3

註: 複數應答의 結果임.

表 8. 口腔檢査 統計表 作成能力(齒齦者數計算能力).

應 答 者	數	百分率(%)
計	184	100.0
1) 충치, 치료할 치아	86	46.7
2) 충치, 치료할 치아, 빼 어야 할 치아	53	28.8
* 3) 충치, 치료할 치아, 빼 어야 할 치아, 뽑은치아	7	3.8
4) 충치, 치료할 치아, 빼 어야 할 치아, 뽑은치 아, 치료된 치아	20	10.9
5) 기 타	12	6.5
6) 무 응 답	6	3.3

註: \*로 表示된 것이 옳은 計算方法.

10과 같이, 34.8%이었고, 57.1%의 養護教師는 不正確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8.2%의 養護教師는 應答을 하지 않았다. 全國의으로 集計된 定期口腔檢査結果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前提할 때, 믿을 수 없는 理由로서는 表11과 같이, 66.3%의 養護教師는 口腔檢査統計表作成能力이 未熟하기 때문

이라고, 23.9%의 養護教師는 口腔檢査者가 誤診을 하기 때문이라고, 15.2%의 養護教師는 報告된 口腔檢査統計表 自體가 虛偽로 作成되었기 때문이라고, 各各 應答하였으며, 8.2%의 養護教師는 其他의 原因이 있었다고 反應하였다.

表 9. 口腔檢査統計表作成能力(處置者數計算能力).

應 答 者	數	百分率(%)
計	184	100.0
* 1) 치료된 치아	86	46.7
2) 치료된 치아, 뽑은 치 아	52	28.3
3) 치료된 치아, 뽑은치 아 뽑아야 할 치아	25	13.6
3) 기 타	11	6.0
5) 무 응 답	10	5.4

註: \*로 表示된 것이 옳은 計算方法.

表 10. 作成된 口腔檢査統計表의 信憑度에 對한 見解.

應 答 者	數	百分率(%)
計	184	100.0
정확하다는 생각	64	34.8
부정확하다는 생각	105	57.1
무 응 답	15	8.2

表 11. 集計된 口腔檢査統計表의 信憑性이 없다고 보는 理由.

應 答 者	數	百分率(%)
統計表作成未熟	122	66.3
口腔檢査者의 誤診	44	23.9
虛 爲 報 告	28	15.2
其 他	15	8.2
無 應 答	28	15.2

註: 複數 應答의 結果임.

9. 口腔保健教育效果에 對한 養護教師의 見解: 表12와 같이, 定期口腔檢査로 學生들의 口腔保健에 對한 關心이 많이 增加되었다고 보는 養護教師는 20.7%이었고, 약간 增加되었다고 보는 養護教師

師는 58.7%이었으며, 增加되지 않았다고 보는 養護教師는 14.7%이었다. 한편 表13과 같이 學父母들의 口腔保健에 對한 關心이 많이 增加되었다고 보는 養護教師는 13.6%이었으며, 약간 增加되었다고 보는 養護教師는 57.6%이었으며, 增加되지 않았다고 보는 養護教師는 25.0%이었다.

表 12. 定期口腔檢査의 學童에 對한 口腔保健教育 効果에 關한 見解.

應 答 者	數	比率(%)
計	184	100.0
많 이 증 가	38	20.7
약 간 증 가	108	58.7
증 가 없 음	27	14.7
무 응 답	11	6.0

表 13. 定期口腔檢査의 學父母에 對한 口腔保健教育 效果에 關한 見解.

應 答 者	數	比率(%)
計	184	100.0
많 이 증 가	25	13.6
약 간 증 가	106	57.6
증 가 없 음	46	25.0
무 응 답	7	3.8

10. 校內口腔保健事業計劃樹立의 參考資料로 使用할 수 있는 可能性에 關한 養護教師의 見解: 定期口腔檢査結果가 校內口腔保健管理事業을 計劃하는 데에 參考資料로 活用될 수 있다고 보는 養護教師는 表14와 같이 72.3%이었으며, 參考資料가 될 수 없다고 보는 養護教師는 26.1%이었으며, 1.6%인 3名의 養護教師는 無應答者이었다.

11. 事業의 繼續實施與否에 對한 見解: 學校定期口腔檢査를 繼續할 것인가, 廢止할 것인가에 對한 見解를 調查하였던 바, 表15와 같이 定期口腔檢査를 現狀대로 繼續하자는 養護教師가 4.3%이었으며, 改善하여 繼續하자는 養護教師는 89.1%이었으며, 廢止하자는 養護教師는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要望事項: 定期口腔檢査에 對하여 總括的인 要望事項으로는 表16과 같이 養護教師의 33.7%가 檢査者인 齒科醫師를 招聘하기가 圓滑하게 되

기를 바라고있었고, 16.3%는 口腔檢査가 充實하게 이루어지기를 要望하였으며, 8.7%는 檢査結果를 集計 整理하기가 용이해질 수 있는, 適切한 措置가 講究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表 14. 校內口腔保健管理事業計劃樹立에의 參考 可能性에 關한 見解.

應 答 者	數	比率(%)
計	184	100.0
참고 자료 가능	133	72.3
참고 자료 불가능	48	26.1
무 응 답	3	1.6

表 15. 定期口腔檢査 制度에 對한 養護教師의 見解.

應 答 者	數數	比率(%)
計	184	100.0
현상태로 계속하자	8	4.3
개선하여 계속하자	164	89.1
관심 없다	0	0
폐지 하자	12	6.5

表 16. 要望事項

要 望 事 項	應 答 者	比 率(%)
計	184	100.0
검사자초빙의 圓滑화	62	33.7
형식적검사의  충실화	30	16.3
결과처리방법의  용이화	16	8.7
기 타	5	2.7
무 응 답	71	38.6

#### IV. 考 按

金等<sup>1)</sup>은 學校口腔保健의 目的을 學校人口의 口腔病을 豫防하고 口腔健康을 保護增進하여, 健全한 心身을 養成하며, 教育 本來의 目標를 達成함에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前提의 目的下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學校定期口腔檢査의 性格은 아직 明確히 規定되지 않고 있다. 現在 學校定期口腔檢査는 體質檢査의 一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全國的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代表的인 學校口腔保健事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學校定期口腔檢査의 實態와 問題點 및 性格과 改善方向에 關한 자세한 調查 研究가 없었다. 이에 著者

는 學校定期口腔檢査를 教育事業인 同時에, 口腔保健情報蒐集事業으로 假定하고, 養護教師들의 見解等을 調査 檢討해 보았다.

學校定期口腔檢査實態는 表1과 같이 93.4%의 國民學校와 中學校에서 實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막연하나마 學校定期口腔檢査가 口腔保健教育事業인 同時에 口腔保健情報蒐集事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思料되었다. 學校口腔檢査를 擔當하였던 者는 表2와 같이 學校齒科醫로 委屬된 者가 36.9%, 學校齒科醫로 委屬되지 않은 開業齒科醫師가 15.3%, 公職齒科醫師가 37.9% 등이어서 學校定期口腔檢査를 擔當하고 있는 口腔保健人力이 單一化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表3 및 4와 같이 檢査者 한사람이 하루에 12.7學級の 751.4名씩을 檢査하고 있어, 한사람을 檢査하는 데에 所要되는 時間은 表5와 같이 24秒인 것으로 推算되었다. 과연 24秒동안에 한 兒童의 口腔健康狀態를 正確히 判斷하여 記錄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었다.

한편 定期口腔檢査過程의 問題點은 表6과 같이 口腔檢査時間의 不足이 52.7%, 齒科醫師의 招聘難이 44.6%, 檢査費用의 不足이 35.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學校口腔保健을 擔當하고 있는 口腔保健人力이 不在나지 單一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問題點으로 생각되며, 學校口腔保健에 對한 보다 根本的인 對策이 樹立됨으로써 解決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되었다.

한편, 이러한 過程을 通하여 處理된 檢査結果는 表7과 같이, 57.6%가 學父母에게, 52.2%가 學生에게, 33.7%가 上級行政機關에 報告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定期口腔檢査를 實施한 後에 蒐集된 資料를 體系的으로 集計 整理 分析하는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養護教師 中 表8, 9와 같이, 3.8%만이 齶蝕罹患者數를, 46.7%의 養護教師만이 處置者數를 올바르게 集計할 수 있었고, 57.1%의 養護教師가 그들 自身이 作成한 口腔檢査統計表가 表10과 같이, 66.3%의 養護教師가 口腔保健統計表를 作成하는 데에 未熟하기 때문에 信憑性이 없다는 見解를 表示하였다. 그러므로 定期口腔檢査結果를 信憑할 수 있게 集計 整理 分析할 수 있도록 養護教師에게 適切한 補修教育等을 하던가, 이를 擔當할 수 있는 별도의 口腔保健人力을 國民學校와 中高等學校에 配置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學校定期口腔檢査가 갖는 教育效果에 對하여, 表12,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 이상의 養護教師가 學生과 學父母에게 教育效果가 있다는 見解를 피력하여, 學校定期口腔檢査가 口腔保健教育事業으로서의 性格을 띠고 있다고 思料되었다. 그러나 Nemir<sup>11)</sup>는 學校口腔保健教育事業의 目的이 첫째 口腔健康의 本態를 理解시키고, 둘째 口腔健康을 管理하는 態度, 特히 合理的인 食習慣을 形成시키고, 口腔衛生管理能力를 培養하며, 口腔保健醫療機關을 利用하는 方法을 가르쳐 주며, 셋째, 잘 配列된 齒牙를 가질 수 있도록하여 健全한 口腔健康을 維持하며 바람직한 學窓時節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고, Stoll<sup>12)</sup>은 學校口腔保健教育의 目標을, 첫째 口腔健康을 管理하는 데에 必要한 行動의 育成, 둘째 口腔健康管理를 하는 데에 必要한 知識을 習得, 셋째 適切한 口腔健康水準을 一生동안 維持하는 데에 必要한 知識과 技術習得을 通한 올바른 口腔保健態度의 育成이라고 檢討하고, 玄<sup>13)</sup>은 口腔保健教育實施後에 學生의 口腔衛生狀態가 好轉되고 口腔保健知識水準과 口腔健康管理能力이 向上되었다고 報告하였고, 陳<sup>14)</sup>도 口腔保健教育에 依하여 口腔衛生狀態가 向上되었다고 主張한 바와 같이, 學校口腔保健教育의 目的은 보다 具體化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調査過程에서는 더 具體的인 口腔保健效果를 調査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學校定期口腔檢査의 具體的인 教育效果에 關한 계속적인 調査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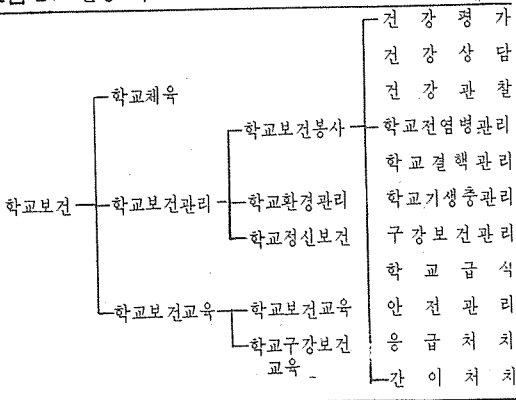
한편, 表14와 같이 72.3%의 養護教師가 學校定期口腔檢査 過程에 蒐集된 情報가 學校口腔保健事業을 記劃하고 執行하는 데에 參考資料로서 活用 可能하다고 反應하여, 學校定期口腔檢査가 口腔保健情報蒐集事業의 性格도 아울러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表15와 같이, 定期口腔檢査制度를 改善해야 한다는 見解를 피력하여 現行 學校定期口腔檢査制度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表16과 같이, 檢査者 招聘의 圓活화와 形式的 檢査의 充實化를 主要望하였으나, 우리나라의 總 齒科醫師 數가 初中高等學校의 半數에도 未達하고, 齒科醫師를 養成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時間이 所要되며, 더구나 齒科醫師들이 大都市에 偏在되어 있어, 齒科醫師 人力만으로는 도저히

히 學校定期口腔檢査를 充實히 할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施術口腔保健補助人力인 齒科衛生士를 養成하는 데에는 比較的 짧은 期間이 所要되고, 教育費도 比較的 적게 투입된다. 따라서, 齒科衛生士의 養成을 보다 加速化하여, 齒科醫師의 指示 監督下에 齒科衛生士들이 學校定期口腔檢査를 充實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檢討되었다.

金等<sup>14)</sup>은 學校口腔保健을 健實하게 發展시키려면 먼저 그 概念을 正確히 把握하고 目的을 效率的으로 達成할 수 있도록 學校保健組織을 잘 갖추어 合理的으로 運營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學校保健을 그림 2와 같이 學校體育과 學校保健管理 및 學校保健教育으로 分類하고, 學校保健管理를 다시 學校保健奉仕와 學校環境管理 및 學校精神保健으로 나누고 學校保健教育을 狹義의 學校保健教育과 學校口腔保健教育으로 나누어 實際로는 學校口腔保健이 度外視되어 왔다. 즉 口腔保健管理와 口腔保健教育이 分離되는 分類를하여 學校口腔保健의 存在가 實質的으로 稀微해졌고, 따라서 學校口腔保健이 度外視되는 結果를 招來했다. 그러므로 學校保健을 專門性에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學校體育과 狹義의 學校保健 및 學校口腔保健으로 大別하고 이들을 더 細分해야 한다. 즉 學校體育과 狹義의 學校保健 및 學校口腔保健은 實質的으로 各其 다른 專門性을 土臺로 發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學校保健이

그림 2. 현행 학교보건제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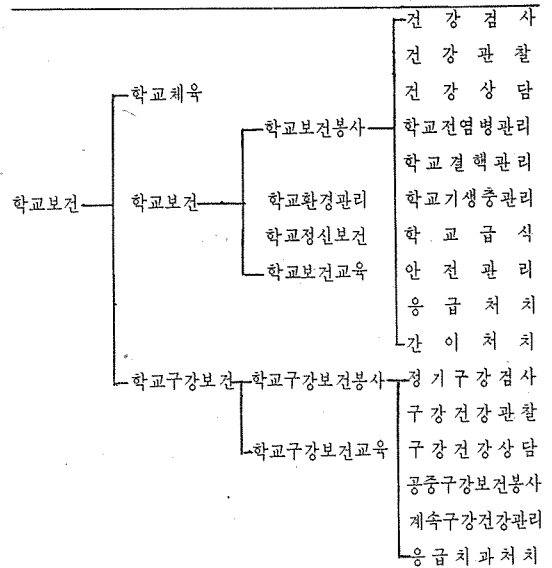


와 같이 分類되지 않는 限 學校口腔保健은 健實하게 發展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sup>15)</sup>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體系的인 管理가 必要하다고 思料

되었다.

Nemir<sup>14)</sup>는 發見된 病變에 對한 處置가 없으면 口腔檢査는 意味가 없다고 하여 繼續管理의 重要性을 強調하였으나, 現在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配慮가 없으며 단지 學父母에게 그 結果를 通知하여 그들에게 事後處置를 一任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的으로 學校人口가 治療를 받는 데는 여러가지 制約點이 따르므로 이들의 口腔健康管理은 學校授業時間 中에라도 治療받는 것이 許容되어야 하고<sup>14)</sup> 이때에 地域社會와 地方齒科醫師의 協調가 있어야 하며, 이들의 治療經費는 地域社會寄附金, 齒科醫師會, 師親會, 國家補助, 地方財政 등으로 充當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係統的이고 體系的인 財政의 確保와 管理의 重要性을 主張하였다.<sup>15)</sup> 더구나 繼續口腔健康管理制度가 口腔病管理에 가장 理想的인 制度라는 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인 以上 各級學校에 繼續口腔健康管理制度의 導入이 時急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림 3. 전문성에 따른 학교보건의 분류



總括的으로 보아 學校定期口腔檢査의 意義는 첫째 教育的인 效果, 둘째 學校口腔保健事業을 하는데 必要한 資料를 蒐集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同時에 學校定期口腔檢査는 그 自體만으로 보다는 다른 學校口腔保健事業을 複合的으로 並行해서 實施하므로써 보다 그 意義를 높일 수 있고, 이러한 事業을 專擔할 專門人力이 各級學校에 配置되는 것이 時急하다 하겠다.

## V. 結 論

著者は 서울시 國民學校와 中學校에 勤務하는 養護教師를 通하여 學校定期口腔檢查에 對한 實態와 問題點을 設問調査法으로 조사하여 分析 檢討 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被檢者 一人當 口腔檢查에 所要된 時間은 平均 24秒로 推算되었다.
2. 養護教師의 口腔檢查統計表作成 能力이 매우 不足하였다.
3. 大體의으로 養護教師는 學校定期口腔檢查를 肯定的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으나, 口腔檢查 時間의 不足, 齒科醫師의 招聘難, 檢查費用의 不足等 의 問題點이 대두되고 있었다.
4. 學校定期口腔檢查가 發展的으로 뜻있게 行해지려면 各級 學校에 學校繼續 口腔健康管理 事業의 導入이 必要하다고 思料되었다.
5. 學校人口에 對하여 適切한 口腔健康 管理를 해 주려면 擔當할 專門人力이 確保되어야 하며, 이를 爲한 行政的인 뒷받침이 要求된다고 생각되었다.

## 參 考 文 獻

1. 金周煥, 金鍾培, 崔有鎮, 金鐘悅: 口腔保健學. 高文社, 初版, 1979.
2. 文教部: 文教部令 112號. 1962.
3. Pelton, W. F., Wisan, J. M.: Dentistry in Public Health, W. B. Saund Co., Philadelphia, 2nd Ed., 1955.
4. 朴南永: 韓國保健行政面에 있어서의 保健教育

- 事業.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0.
5. 金榮煥: 高等學校 保健教育의 實態調査.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1.
  6. 曹秉均: 國民學校保健教育에 關한 實態調査.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1.
  7. 金松子: 學校保健에 關한 調査研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4.
  8. 李守熙: 中高等學校 保健教育實態에 關한 調査研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5.
  9. 李善燮: 學校保健實態에 關한 調査研究.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65.
  10. 李成基: 一部 農村地域의 學校保健事業 實態에 對한 調査, 서울大學院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74. 2. 公衆保健雜誌. 11卷 2號.
  11. Alma, Nemir: The School Health Program. W. B. Saunders Co., Philadelphia, 3rd Ed, p. 136., 1970.
  12. Frances A. Stoll: Dental Health Education, Lea & Febiger Co., Philadelphia, 5th ed 1977, p. 163. p. p. 177~202.
  13. 玄天燮: 集團口腔保健教育 및 管理의 效果에 關한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9: 688-700, 1971.
  14. 陳京熙: 直接集團 口腔保健教育效果에 關한 實驗的 研究.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3: 127-131, 1975.
  15. Charles A. Bucher: Administration of School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s. C. V. Mosby Co., Saint Louis, 3rd ed, 1963. p. p. 97-110.



EVALUATION OF PERIODICAL ORAL EXAMINATION IN  
SCHOOL CHILDREN  
(CENTERED BY SCHOOL NURSES' RESPONSES)

*Dep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Paik Dai-il, D.D.S., M.S.D.

..... > Abstract < .....

Periodic oral examination must be accomplished in elementary and high schools in every year, but many problems happened to be checked out. So, the author questionnaired problem to school nurses about the periodic oral examination.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

1. It took about 24 seconds per child to examine oral status.
2. It was revealed that school nurses could not be able to accomplish reporting about the children's oral health status.
3. Generally speaking, school nurses had affirmative views about the periodic oral examination.
4. It was needed that incremental dental care system was operated for school children.
5. It was concluded that school dental health with man-power problem was dealt on the government level.

.....